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8
----------	------

제출연월일: 2019. 12. 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용 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준용”)을 개정하고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만 과태료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세기본법 등’을 삭제

##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안 제12조)

##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45441호, 2019. 11. 22.)
- 라. 입법예고: 생략
  -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해 입법예고 생략 가능
  -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 대해서는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에 따른다.

## 근 거 법 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보건과
- 직 급: 지방보건주사
- 성 명: 권 순 옥
- 연락처: (052)290-4312